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474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전수려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현주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7. 13.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단521739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에 기재된 ‘전주지방법원’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로, ‘같은 법원’을 ‘같은 등기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2019. 6. 12.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9. 14.자 증여계약에 대한 합의해제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19. 6. 13. 접수 제20143호로 말소등기된 각 같은 등기와 2018. 9. 18. 접수 제35242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분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1. 11. 11.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2. 7. 19.경 사건기록열람 및 복사를 통해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한 후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2. 8. 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취득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를 담보하고자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21. A와 사이에,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8,91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6. 4. 21.부터 2021. 4.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6. 4. 21.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H)를 중소기업은행에 발행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A은 2019. 9. 6. 대표자인 제1심 공동피고 B의 자금사정악화로 인한 부실사유 발생과 2019. 10. 8.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6. 4. 대출원리금 64,517,863원(= 원금 64,152,000원 + 이자 365,863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65,320,345원(= 대위변제금 64,517,863원 + 위약금 154,660원 + 대지급금 잔액 647,822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64,517,86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6. 4.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12. 15.까지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취득하였다.

나.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1)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8. 9. 18. 접수 제35424호로 2018. 9.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제1심 공동피고 B(피고의 누나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과 2019. 6. 13. 접수 제20143호로 2019. 6. 12.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제1심 공동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2)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9. 6. 12.자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 적극재산(3억 9,500만 원) : 용인시 처인구 K건물 L호(45,000,000원),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J호(3억 5,000만 원)

○ 소극재산(446,865,254원) : N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276,754,872원), O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3,400만 원), T에 대한 채무(12,163,012원), U카드에 대한 채무(3,766,370원), W카드에 대한 채무(8,438,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7,128,000원), Y에 대한 채무(12,163,000원), Z에 대한 채무(20,300,000원), 원고의 가압류청구금액(64,152,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1) 제1심 공동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2019. 6. 12.자 합의해제를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3~4개월 뒤에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통해 ‘2019년 B이 갑자기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다수의 채권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바람에 피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말하였다’고 언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 공동피고 B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처분하려고 2019. 6. 12.자 합의해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2019. 6. 12.자 합의해제 당시에는 이미 제1심 공동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2019. 6. 12.자 합의해제로부터 불과 3~4개월 뒤에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6. 4.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인 2019. 6. 12.자 합의해제 당시에 이미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9. 6. 12.자 합의해제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9. 6. 13. 접수 제20143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과 2019. 9. 18. 접수 제35242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인데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2019. 6. 12.자 합의해제를 한 것일 뿐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주문 제2.의 나.항에 기재된 ‘전주지방법원’과 ‘같은 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와 ‘같은 등기과’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각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주진암, 판사 이정형, 판사 김연화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북도 군산시
대 218㎡
2. 전라북도 군산시 호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목조 스테이지형 단층주택
34.9㎡
3. 전라북도 군산시
임야 43㎡

- 이 상 -

1) 2021. 10.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와 '같은 등기과'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와 '같은 등기과'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